

구 인 의 퇴 서

▶ 기관개요 및 구인사항			접수마감(채용시마감)	
회 사 명	㈜오토크			
홈 페이지	www.alltool.kr	업 종	제조업(집진기제작)	
사업자등록번호	130-87-02620	상시근로자수	20인	
전 화 번 호	1577-7097	팩 스 번 호	032-664-1238	
담 당 자	심정숙	E-Mail	autolink2@naver.com	
소 재 지	인천시 서구 보동1로 6			
담당업무/모집인원	환경시설관리 / 1인	자격조건 (신입/경력)	■ 무관 □ 신입 □ 경력 (개월)	
근무 시간	평 일	주5일	월급/연봉	면접후 결정
	토요일	한달에 한번 오전근무	퇴 직 금	■ 유 □ 무 □ 퇴직연금
휴 무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타 ()		4대 보험	■가입
성 별/연 령	■남 □여 □무관 (만 28 세 ~ 만 45 세)		식사제공	■ 유 (식대지급) □ 무
			고용형태	□ 상용직 □ 계약직(기간 :) ■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기타
학 력 사 항	고졸 이상	지 원 방 법	□ 내사 □ FAX ■ E-Mail	
구 비 서 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본 □기타 ()		전 산 능 력	■문서작성 ■엑셀 □ 홈페이지제작 □기타 ()
상 세 직 무	지원사업관련 서류준비와 업체미팅 진행과정 수행등			
필수·우대 조건	대기환경면허자격증소지자, 영업자질이 조금 있으신분			
근무환경 및 복지	식비제공, 연월차, 공휴일휴무, 생일자선물증정			
교 통 편	자차 소지자 환영			
※ 접수처 기재사항				
접 수 일 자	2023. 03. 17.	확 인	임은애	

산 학 협약서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기술교육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 사항을 사전협의에 의하여 상호협력 할것을 협약한다.

■ 다 음 ■

제1조 (협약내용) 본원과 산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상호협력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현업 종사자의 연수 또는 제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동 유지에 관한 제반 협력사항

제2조 (교육원의 의무) 인천직업능력개발원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 인력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공동의무) 개발원과 산업체는 상호협력 하에 연구활동 및 기술정보 교환과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 본 협정은 개발원과 산업체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내용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득이 협정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실무자와 협의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7일

업체명 ㈜오토링크

주소 인천시 서구 보동1로6

대 표 이 병 호



인천직업능력개발원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108

경향프라자 13층

원 장 이 수 남

산 학 협 약 서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기술교육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 사항을 사전협의에 의하여 상호협력 할것을 협약한다.

■ 다 음 ■

제1조 (협약내용) 본원과 산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상호협력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현업 종사자의 연수 또는 제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동 유지에 관한 제반 협력사항

제2조 (교육원의 의무) 인천직업능력교육원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 인력 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의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경영기술 개선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공동의무) 교육원과 산업체는 상호협력 하에 연구활동 및 기술정보 교환과 위탁교육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을 진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 본 협정은 교육원과 산업체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내용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득이 협정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실무자와 협의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7일

회사이름 ㈜오토링크

회사주소 인천시 서구 보동1로6

대 표 이 병 호



인천직업능력교육원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96
기한빌딩 10층

원 장 이 수 남